

12/31/2024-1/1/2024 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

뉴욕 시

모든 고용주
최저 임금
\$16.00

40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4.00

가구(unit)당 건물 관리인 최저 임금 \$10.65
또는
건물 관리인 최저 주급 \$680.55

Long Island 및 Westchester County 카운티

최저 임금 \$16.00

40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4.00

가구(unit)당 건물 관리인 최저 임금 \$10.65
또는
건물 관리인 최저 주급 \$680.55

그 외 나머지 뉴욕 주

최저 임금 \$15.00

40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22.50

가구(unit)당 건물 관리인 최저 임금 \$10.00
또는
건물 관리인 최저 주급 \$637.50

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혹은,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시려면

www.labor.ny.gov/minimumwage 를 방문하거나 다음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: **1-888-469-7365**.

임금을 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공제액 및 수당:

- **아파트 및 공공요금** -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제공한 아파트 및 공공시설에 대한 요금을 임금 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적용 금액과 요건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임금 규정 및 요약에 나와있습니다.
- **전화** - 고용주는 고용주가 최소 청구 요금 이상 지불한 금액을 임금 공제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**팁** - 팁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.

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 임금:

- **초과 근무 수당** -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임금의 1 1/2배이어야 합니다(상기에 명시된 초과 근무 수당 미만일 수 없음).
예외: 주급이 최저 임금의 75배 이상인 주거용 건물 건물 관리인, 봉급(일정급여)을 지급 받는 전문직 근로자 또는 임원 및 관리 직원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.
- **유니폼 관리** -근로자가 자신의 유니폼을 직접 세탁할 경우, 추가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급금액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